

- 846. 동강상생사회적협동조합
- 847.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 848. 천안오성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 849. 주천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청정주천
- 850. 세종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 851. 안다미로 사회적협동조합
- 852. 양산희망학교사회적협동조합
- 853. 금곡고 사회적협동조합 버디클럽
- 854. 서종초사회적협동조합말꽃
- 855. 마을교육공동체 세원고사회적협동조합
- 856. 송산고 마을교육공동체 개방형 사회적협동조합 핑거스넥
- 857. 신비고사회적협동조합도토리
- 858. 추풍령클럽피스 사회적협동조합
- 859. 고산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고순도순
- 860. 익산부송중학교도담사회적협동조합
- 861. 전라중학교 생그레 사회적협동조합
- 862.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 863.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동행
- 864. 서부산공업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 환경부고시제2020-223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 개정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제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 및 기타분야”를 “환경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2 별표5의2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등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는 특급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본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평가항목별 조사비(‘별표 6의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을 수행하는 비용’을 말한다) 및 환경질 측정분석비는 관계법령에 고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실비를 적용한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장이 해당 항목의 시장가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22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이란 에어돔형이나 지붕형 폐기물매립시설(이하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에어돔형 폐기물매립시설(이하 “에어돔형”이라 한다)”이란 공기막 구조로 공기막 내·외부의 압력 차에 따라 막재(幕材)에 강성을 주어 일정한 폐쇄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의 폐기물매립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3. “지붕형 폐기물매립시설(이하 “지붕형”이라 한다)”이란 철골구조물 등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추고 지붕 위에 외장재인 막재(幕材) 등으로 일정한 폐쇄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의 폐기물매립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4. “유해가스”란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최종처분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 고시보다 강화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되 그 외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기준

제4조(에어돔형 설계기준) 에어돔형 설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어돔형 구조의 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의 KDS 41 70 01 막과 케이블 구조 기준을 준용한다.
2. 에어돔형 구조의 설계하중은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공방법 등에 따른 추가 하중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가. 고정하중(D)

나. 활하중(L)

다. 적설하중(S)

라. 풍하중(W)

마. 지진하중(E)

바. 초기 인장력(T_i)

사. 내부압력(P_i)